

[별표1]

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(제4조제2항 관련)

평 가 인 자 (항 목)	평 점		
	-3	0	+3
수 질 등 급 취 수 량	상수원수 I 급 1일3천톤미만	상수원수 II 급 1일3천톤이상 1만톤미만	상수원수 III급 1일1만톤이상
취 수 비 율	0.1미만	0.1이상 0.5미만	0.5이상
(호소수의 경우)	(0.01미만)	(0.01이상 0.02미만)	(0.02이상)
개발잠재력	없음	보통	있음

- 비고:1. 수질등급의 판정 :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항목중에서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, 호소수의 경우는 화학적산소요구량·총인 및 총질소를 기준으로 판정한다.
2. 취수비율 :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, 호소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유효저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.
3. 개발잠재력은 상수원의 지리적 위치·경관·토지이용 전망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.
4. 위 표에서 평가점수의 합계를 항목수로 나눈 값과 표준거리를 합산한 값을 보호구역의 지정거리로 한다.